

#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 2941호
- 제 출 자 : 안산시장
- 제출일자 : 2017. 1. 5
- 회부일자 : 2017. 1. 11.

### 2. 개정이유
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「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제2항 중 사회복지 시설 위탁계약 기간이 “5년 이내”에서 “5년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「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 위탁기간 등을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계약 기간을 “3년”에서“5년”으로 개정하고 -제6조 (위탁운영)  
재계약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

### 4. 검토의견

-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인 『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제2항 중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기간이 “5년 이내”에서 “5년”으로 개정됨에 따라
- 「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# 5. 참고자료 : 관계법령 1부

## <관련법령>

### 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, 2016.8.3.>

### □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위탁기간의 연장)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. (신설 2015.11.23.)

④ 위탁기간의 연장 방법과 절차,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. (개정 2015.11.23.)